

『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2016년 조례개정으로 상수도 요금을 2020년까지 5년간 연도별 2.5% 인상하였으나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 및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 등으로 특별회계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 추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,
- 안정적 재원확보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상수도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상수도 업종별 요금 및 구경별 정액 요금 추가 인상
 - 당초 :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도별 2.5% 인상
 - 개정 :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7.5% 추가 인상(2019년 10%, 2020년 7.5%, 2021년 7.5%)(안 별표 2, 별표 4)
 - 2019년 11월 고지분부터 조정(원/㎥당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수도법」, 「지방공기업법」,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, 수도과와 합의되었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-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 및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 등으로 특별회계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상수도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- 세입감소에 따른 상수도시설 확충 및 노후관 교체공사 등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음을 감안할 때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되나, 시민생활과 밀접한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시민 및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수도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